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의안번호	제299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4. 5. 23.)
의 안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제10조)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현행화(안 제3조~제4조, 안 제9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4. 18.(목) ~ 5. 8.(수),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왔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2조제1호¹⁾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²⁾ :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³⁾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문화재(→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 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

-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4)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5) :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4호6) : 문화재 → 국가유산

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5)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⁷⁾ : 문화·예술·문화재 → 문화·예술·국가유산
-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⁸⁾ :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⁹⁾ :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
제21조제4항제1호¹⁰⁾ : 문화재위원 → 국가유산위원
제33조¹¹⁾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7)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문화·예술·문화재(→문화·예술·국가유산),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 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제10조(예산 지원 등)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재(→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9) 제16조(자료 구입) ② 구청장은 경매 구입,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및 그 밖의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10) 제21조(자료평가위원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위원(→국가유산위원) 및 전문가

11)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제3호¹²⁾ :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2)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문화재보호구역(→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